

## 납 품 계 약 서

[      매수인명      ]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와 [      매도인명      ]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는 “을”이 공급하는 제품(이하 “제품”이라 칭함)을 “갑”을 구매자로 하고 “을”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.

### 제1조(발주내역)

구 분	내 역	비 고
품 명		
SPEC		
STYLE NO		
단 가	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
수 량		
금 액	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
납 기	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	
특기사항		

단,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, 수량, 납기 등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2조(원·부자재)

“을”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“갑”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·부자재를 자체 조달,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포장자재 및 LABEL, TAG은 “갑”이 공급한다.

“을”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“갑”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·부자재는 “갑”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, 포장자재 및 LABEL, TAG도 “갑”이 공급한다.

### 제3조(견품승인)

“을”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“갑”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품에 대한 “갑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4조(하도급 금지)

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 승인 없이 “갑”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, 이에 위반할 시는 “갑”의 처리에 따른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)

수정: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 또는 물품의 납품가격 및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 그러나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며,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제품 생산완료 후 “갑”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 기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조(검사)

① “을”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“갑”이나 “갑”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요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“갑”의 검사기준에 의한다.

③ 제품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검사명	검사 세부내역
검사내용	이화학 검사	원자재 혼용율, 세탁견뢰도, 땀 견뢰도, 수축율 등

구 분	검사기관	검사등급
	“갑”이 지정하는 공공기관	B급

제7조(불합격품의 처리)

① 생산된 제품은 “갑”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,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.

② 불합격품 중 B급은 “갑”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%로 인수할 수 있으며 “갑”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“을”은 “갑”의 동의하에 LABEL 및 TAG 기타 “갑”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 기타 “갑”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.

#### 제8조(상표관리)
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요청한 제품에 “갑”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 “을”은 작업 완료 후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기타 “갑”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“갑”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“갑”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.

#### 제9조(납품)

① 제품의 납품은 “갑”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(B급 중 “갑”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)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.

②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“을”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④ 납품장소는 “갑”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#### 제10조(대금결제)

① “을”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, “갑”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( ) 일 이내에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. 단,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 우려가 있는 경우 및 “을”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“갑”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이 위 정한 대금지급기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, “갑”은 지급 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( )%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비용의 부담)

① 납품에 소요되는 운임 기타 제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“갑”의 부담으로 한다.

#### 제12조 (손해배상)
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은 검사 불합격품, 재고제품 또는 “갑”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“갑”의 사

전 승인 없이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%를 손해배상금으로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“갑”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. 단, “갑”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정상판매가격의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%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,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“갑”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.

#### 제13조 (납품 불이행시 제재)

##### ① 수량 부족

“을”의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%를 손해배상으로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# ② 납기 지연

“을”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[     3/1000 ]씩 배상한다.

#### 제14조 (담보제공)

① “을”은 본 계약의 이행 및 “을”이 생산,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,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“갑”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“갑”이 인정하는 담보를 “갑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,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“을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“갑”은 최고 또는 이행의 청구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 (유효기간)

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(제품의 납품에 따라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을 의미함)까지 유효하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본 계약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

#### 제16조 (양도금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,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·증여·대물변제·대여하거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.

#### 제17조(계약의 변경)

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, 그 변경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 다음날부터 효력을 지닌다.

#### 제18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갑”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, 화의, 회사정리,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
2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상호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②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)

#### 제19조(분쟁해결)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.

#### 제20조(기타)

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.

상기 계약내용을 확인,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갑”, “을”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[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]

	갑	을
당사자명	[ ]	[ ]
주 소	[ ]	[ ]
대표자명	[ ]	[ ]
서 명		